

전 주 지 방 법 원

이행권고결정

사 건 2021가소 : 물품대금
원 고 주식회사
주소 별지 기재와 같다.
대표이사
피 고 유한회사
주소 별지 기재와 같다.
대표자 이사

청구취지와 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행할 것을 권고한다.

이 행 조 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청구취지 제1항의 금액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021. 8.

사법보좌관



- ※ 1. 이행권고결정은 소장의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에 특별한 오류가 없는 이상 원고의 주장만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된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2.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서와 별도로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소액사건 소송절차 안내' 참조)

※ 문의사항 연락처 : 전주지방법원	민사12단독(소액)	법원주사보
직 통 전 화 : 063-259-5526, 5522(이행권고)		
팩 스 :		e-mail :

소 장

원 고 ○○○○○ 주식회사(.*****)
 전북 ○○○○○ ()
 송달주소: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39, H타워 301호 법무사 전종필 사무소(만성동 1366-9) (송달영수인 : 전종필)
 대표이사 ○○○○○
 (휴대전화: 010- .***** 이메일: jpb420@hanmail.net)

피 고 유한회사 : ○○○○○ (.*****)
 전주시 ○○○○○ ○○○○○
 이사 ○○○○○

물품대금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50,1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0. .부터 ○○○○○ 까지
 는 의, ○○○○○ 까지는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 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유한회사
 상호로 ○○○○○ 등 ○○○○○ 제조, 설치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원고
 는 2017. 9. ○○○○○경 피고의 요청으로 부가세 포함 1,450,100원의 ○○○○○ 1대를 판매
 한 사실이 있습니다.